

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45호
「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상위법인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
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
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.

- 이에 근거해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

조례로 명시해,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